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8
----------	-----

2022년 9월 2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6일, 남창진 의원(찬성자 48명)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9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현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및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조직)에 따라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소방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내에서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내부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03.05.일 소방청의 제도개선 권고(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94)¹⁾에 따른 후속조치임.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²⁾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1958년에 「소방법」 제정으로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1972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1)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필요에 따른 시·도 자치법규 개정 권고',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594, 2022.03.05.

2)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제정되었고 2005년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22년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200대 5,000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음. ([표] 참조)

[표] 2022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 ○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 ○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 ○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정 공포(7월29일 시행)
조직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총 3,921대, 총 95,654명으로 구성 활동 중 - 서울시 총 200대 5,000명으로 구성 활동(정원) / 현원 4,519명 ○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8월말 총 9,407회, 연인원 24,963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8월말 총 101회, 연인원 341명 참여하여 봉사활동 전개
예산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구분 : 시도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 ○ 예산현황 : 총 30억 7천 5백만원('22년)

- 이들의 금년도 활동실적은 8월말 기준으로 총 9,407회 출동하여 연인원 24,963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01회(인원 341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세부실적 현황 (2022. 8월말 기준)

구분	계	화재진압 업무보조	재난발생 대피보조	구조구급 업무보조	화재예방 업무보조	각종행사 안전지원	주민안전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건수	9,407	84	56	34	4,604	873	1,028	2,728
인원	24,963	283	58	45	11,295	399	4,171	8,712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2022.8월말 기준)

구분	계	농어촌 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자연보호	불우이웃 돕기	기타
건수	101	0	51	2	39	9
인원	341	0	145	50	96	50

- 또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현황을 직위별로 살펴보면, 총 4,519명 중 대장 52명, 부대장 41명, 지역대장 114명, 부장 94명, 반장 647명, 대원 3,571명이 활동 중에 있음.

[표] 서울시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현황

(단위:명)

구분 \ 직위	계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부장	반장	대원
계	4,519	52	41	114	94	647	3,571
본대 의용소방대	1,609	27	41	0	94	93	1,354
지역 의용소방대	2,339	0	0	114	0	465	1,760
전문 의용소방대	571	25	0	0	0	89	457

■ ‘부장·반장’의 임명기준에 대한 명문화 관련 의견(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 신설조항은, 현행 조례 제7조(대장 등의 임기)³⁾에 의용소방대 조직 내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과 관련해서는 그 임기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3)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장,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 부장·반장에 대한 임명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직의 운영상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원 간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동안 동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소방관서 별로 제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의용소방대 조직 및 임무와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이 부족한 대원이 임명되거나 혹은 교육 및 훈련 참여 실적이 저조한 대원이 임명되는 등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고, 소방 활동 사항을 고려해 임명토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숙달된 대원이 간부로서 활동하도록 하여 조직의 융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붙임] 1. 소방청 권고사항

[붙임] 1. 소방청 권고사항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일익의 공헌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필요에 따른 시·도 자치법규 개정 권고

1. 관련문서

- 가. 화재대응조사과-1529(2021.12.24)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안) 의견수렴 알림'
- 나. 화재대응조사과-525(2022.1.19)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신설(안) 의견수렴 결과 알림'
- 다. 화재대응조사과-801(2022.2.3)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도 자치법규 개정(안) 의견수렴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도 의견수렴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시·도에서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22년 중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승진권 위소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긍정적·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임참조

다. 신·규준준대비표 : 불임참조

붙임...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도 자치법규 개정(안) 알림 1부.....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청(행정대령과장), 충청남도청(대전도시관리과장), 대전광역시청(예방법과장), 인천광역시청(119대응대령과장), 광주광역시청(대응예방과장), 강원도청(환경대령과장), 충청남도청(대전대령과장), 충청남도청(119대응대령과장), 서울특별시청(대응예방과장), 경기도청(환경대령과장), 대전광역시청(환경과장), 충청도지사(발로쿠즈과장), 충청북도지사(대응출발과장), 충청남도지사(예방법과장), 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북도지사(발로쿠즈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예방대령과장), 합천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

담당 김삼환 계장 이영환 민과대령조사과 이진호 119대령과장 2022. 8. 5. 14:00

회신자

시청 119대령조사과-1694 (2022. 8. 5.) 접수 119대령과-6024 (2022. 8. 5.)
 주 80128 서울특별시자치시 교통안전본부 13, 소방청 (나성동) / www.nfa.go.kr
 전화 044-206-7478 / 전술 044-206-8988 / sampoo7788@korea.kr / 비밀재(5)

의소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도 자치법규 개정안 알림

□ 개정이유

- 숙련된 의소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긍정성·관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안)을 추가함.
 - 대원 → 반장(3년 이상), 반장 → 부장(3년 이상)
-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시 「의용소방대법」 제7조(임무) 및 제13조(교육 및 훈련) 활동 사항을 고려하도록 추가함.
-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예외 규정을 추가함.

□ 신·구조문 대비표(예시)

현 명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향후계획

- 시·도 자치법규(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8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6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지,
도문열, 문성호,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한 신,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현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및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조직)에 따라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 (안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7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 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 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 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